

보도시점 2026. 6. 21.(일) 12:00 / 배포 2026.6.19.(금) 08:30
< 6. 22.(월) 조간 >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 : 6월 21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주)* (이하 ‘두산밥캣코리아’)가 ①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②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

①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 요구)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하였다.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 보증인이 되어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조사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②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건 설정)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실제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제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가맹유통심의관 대리점거래조사과	책임자	대리점거래조사과장 조원식 (044-200-5144)
		담당자	사무관 장상민 (044-200-5150)

1

행위사실 및 법 위반 내용

가.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

- 1) (행위사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리점이 지게되는 일체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리점이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 직원, 직원의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제공토록 요구하였다.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제25조(연대보증인)

1. B(대리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A(두산밥캣코리아)에게 지게되는 일체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격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B(대리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 자신
 - (2) B(대리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지분 참여자
 - (3) 기타 재력있는 제3자
4.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따른 B(대리점)의 모든 책임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한다.
5.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라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그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권 내지 사전 통보 수령권을 이에 포기하며, 변경에 대해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담보의 제공)

1. B(대리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A(두산밥캣코리아)에게 지게되는 일체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 제공의 범위는 별도의 업무 규정에 의한다.

<담보 운영(제공) 규정(일부 발췌)>

B(대리점)는 A(두산밥캣코리아)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 제품에 대한 채무 이행 담보로서 A(두산밥캣코리아)에게 일정수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운영키로 한다.

(1) A(두산밥캣코리아)와 B(대리점) 간의 재계약(계약연장) 시점의 담보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 또한 최소 담보 운영 기준은 3억으로 하며, B(대리점)는 동 기준에 의해 산출된 담보금액을 A(두산밥캣코리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담보 운영 기준(매출금액별 담보 입보 금액)

연간 매출액	최저 담보 금액
150억 초과	6억
150억 미만	5억
120억 미만	4억
80억 미만	3억

2) (위법성 판단)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비자임에도 두산밥캣코리아는 위탁판매대리점에 불과한 대리점에게 자신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 담보 제공액을 정하였으며, 대리점이 최저 담보 금액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하였다.

이는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나.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의 상계 조건 설정 행위

- 1) (행위사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의 채무를 이행토록 하고, 미회수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대리점계약서(일부 발췌)>

제23조(이행담보책임)

1. “B(대리점)”는, 본건 위탁매매에 관하여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A(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이 있다.

제24조(수수료의 상계)

1. “A(두산밥캣코리아)”는 제23조 각호에 의해 “B(대리점)”에게 대해 가지는 채권과 “B(대리점)”가 “A(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 청구권을 같은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2) (위법성 판단)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이므로 상품 대금의 미회수 위험은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하나, 대리점에게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을 대리점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비자가 미납한 상품 대금인 반면,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한 등 상계를 통해 부담해야 하는 대리점의 책임 정도가 과도하였다.

이는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9. (생략)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1.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 종류	
			업태	종목
두산밥캣코리아(주)	박형원, 김태일	2021. 7. 1.	제조/판매	지게차

-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750명(2025. 12. 31.기준)

* 두산밥캣코리아는 2021. 7. 1.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주)두산으로부터 '지게차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문만 물적 분할되어 두산산업차량(주)로 신설되었으며, 2024. 1. 1. 두산밥캣코리아(주)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주)로 변경하였다.

2. 재무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 단위: 백만 원)

연도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5년	5,000	979,212	1,248,427	71,283
2024년	5,000	1,087,542	1,491,106	151,315
2023년	4,000	892,334	1,444,166	326,017
2022년	4,000	854,806	1,265,215	7,926
2021년 7월~12월	4,000	672,158	459,887	△6,964